

국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산재예방 서비스 전문기관” 으로 재도약!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KT&G 세종 신인쇄공장 통합자동참고 신규도입 현장소장)  
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보

1. 귀 사(현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에 제출한 「KT&G 세종 신인쇄공장 통합자동참고 신규도입」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조건부 적정함을 통보하오니 심사결과 통지서를 참조하여 조건부 내용과 동 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붙임3]의 안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가입 및 월별 자체 점검자료 등록하는 등 해당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시스템」 귀 현장 관리번호 : **4120230073**

- 붙임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1부.
  2. 대형사고 위험요인 관리표 1부.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안내사항 1부.
  4.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1부.
  5. 발주자 의무 이행 안내문 1부.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부.(별도송부) 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수신자 (주)에스에프에이 대표이사, KT&G 대표이사



대리 안석영 차장 출장 부장 전결 09/27 박병규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부-2556 ( 2023. 9. 27. ) 접수 ( )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 <http://www.kosha.or.kr>

전화 042-620-5627 /전송 042-636-5508 / [ahnsy@kosha.or.kr](mailto:ahnsy@kosha.or.kr) / 공개

대표번호 052)703-0500 1644-4544 <http://www.kosha.or.kr> /고객참여

o 공단 업무 관련 인권침해, 갑질,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신고(전화 052-2458-114, 공단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사업장명	(주)에스에프에이 / 세종 신인쇄공장 통합자동창고 신규도입공사		
업종	건설업	전화번호	010-6430-1061 (현장소장)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곡리558		
사업주 성명	김영민 (현장소장 : 김월수)		
심사대상 공사 종류	지상높이 31m이상인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제②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불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2023년 9월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시본부장



첨부서류	1. 계획서 1부 2. 보완사항 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조건부 적정원인 및 보완사항 기재서

2023. 9. 27.

책임심사위원 : 박 병 규 

심 사 번 호	제 대세광본건 2023-0-074호
회사 및 현장명	(주)에스에프에이 / KT&G 세종 신인쇄공장 통합자동창고 신규도입
심사 대상공사 종류	대상공사별 종합의견 및 판정결과
지상높이 31m이상 건축물공사	심사결과 조건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 중 보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u>조건부 사항은 확인시 제출</u> 바람

심 사 항 목	조건부 적정원인 및 보완사항	심사기준 (관계법규 등)
I. 조건부사항 1.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 심사결과 조건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 중 다음 사항을 보완 비치, 이행 및 확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동절기, 혹서기 근로자 안전보건대책 보완 수립 - 동절기, 혹서기 폭염특보 발령 등 기준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대책 작성.  1-2.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계획 보완 수립 -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계획 작성.  - 이 하 여 백 -	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조

심 사 항 목	조건부 적정원인 및 보완사항	심사기준 (관계법규 등)
II.확인 계획	<p>1-1 확인 예정시기</p> <p>- 최초확인 시점 및 해당 작업 : 2023. 12월 경</p> <p>※ 최초 확인일 또는 대형사고 위험작업 예정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정을 해당작업 15일전까지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p> <p>1-2 제출자료</p> <p>- 조건부 사항에 대한 현장 보완서류 등</p>	시행규칙 제46조

대형사고 위험요인	장소 및 작업	작업예정 시기	위험작업 시 확인 중점 사항
랙 조립작업	랙 조립공사	2023년 12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랙 조립도와 조립기준 준수여부</li> <li>- 사용재료의 적정성 여부</li> <li>- 조립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등</li> </ul>
<p>“ 이하 여백 ”</p> <p>“다음 페이지에는 조건부 보완 비치·이행 사항이 아닌 준수/권고사항이 기술됨”</p>			

심사항목	조건부 적정원인 및 보완사항	심사기준 (관계법규 등)
<p>Ⅲ.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p> <p>1. 가설공사</p>	<p>※ 당 현장 계획서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준수사항 중 특히 준수를 시점 드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이행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 비계+작업발판 설치/해체 계획 수립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이음, 수직재, 수평재, 장선재, 가새재 등 설치 간격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상세 작성 후 시공</li> <li>- 외벽 창호용 벽연결재, 벽체용 벽연결재 등 구분 계획 수립</li> <li>- 비계 해체 시 각 단계별 작업 절차서 작성 등 안전작업 계획</li> </ul> <p>2) 시스템비계(강관비계) 조립·해체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li> <li>-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썬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li> <li>-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li> <li>-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li> <li>-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li> <li>-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li> <li>- 비계해체 순서는 <u>지상1층에서 상부층(옥상층)으로 벽이음 철물보강 후</u> → 상부층에서 지상1층으로 해체 하도록 관리 (비계 외부 기둥 지상1~2층에 가새 설치하여 붕괴방지조치 철저)</li> </ul>	<p>준수사항</p>
<p>2. 밀폐공간</p>	<p>1) 지하층 등 밀폐공간 방수(예폭시 등), 갈탄사용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 시 다음사항 준수 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시작전, 작업중 환기 실시 철저밀폐 공간 내 작업 시 안전 작업계획수립, 안전교육 등 질식, 추락사고 방지에 필요조치</li> <li>- 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실시</li> <li>- 가스용기 작업 전 점검, 유증기 발생작업 및 동절기 Con'c 양생 등 폭발·질식위험 시 환기설비 설치·가동, 호흡용보호구 지급</li> <li>※ 공간 체적의 5배 이상 신선한 외부공기 환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 교육(위험요소, 가스농도측정/환기 방법 등)</li> <li>※ 적정 산소농도: 18%-23.5%, 황화수소: 10ppm미만, 탄산가스: 1.5%미만 가연성가스(메탄등): 10%미만, 일산화탄소: 30ppm미만</li> </ul>	<p>준수사항</p>

심사항목	준수사항	심사기준 (관계법규 등)
3. 건설장비	1)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장비 이용 시 「건설장비 안전 작업계획서」 수립 및 이행 하여 장비의 전도/도괴, 충돌/협착, 낙하, 추락 등 사고 예방 - 장비별 허용하중, 작업매뉴얼, 안전작업 수칙 확인, 작업자 안전교육	준수사항
4. 화재·폭발	1) 화재/폭발/질식 방지 안전조치 - 위험물질 취급 시 MSDS 작성, 안전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이상 유무 확인], 환기 설비 설치/기동 - 용접 등 화재 위험 시 화기 사용 허가제 운영, 감시인 배치, 주변 인화성/가연성 물질 제거, 불꽃 비산 방지막 설치, 가스용기 사전 점검, 소화기 비치 유증기 발생 작업 사전 환기 등 안전 작업절차서 작성 2) 인화물질 인접하여 용접 등 화재/폭발 관련 안전작업계획 - [용접 방법]인화물질 등과 인접한 설비 배관 용접 시 천정 등에 불티비산 방지포 설치 등 화재 방지 안전작업계획 및 화재예방계획 수립	준수사항
5. 기타	1) 우레탄폼, 에폭시 등 위험물질 취급시 MSDS 작성/비치, 개인보호구 지급, 환기시설, 안전교육 등 화재/폭발/질식 예방 철저 - 각 작업 시 사용할 화학물질 종류, 사용량, 사용작업, 사용시기 등 - 각 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철저 ※ 용접, 산소절단 등 불꽃발생 작업 시 불꽃비산방지막 설치, 주변 위험물 제거 ※ 단열재 주변 용접 등 화기 사용은 사전 허가제 운영/감시인 배치/위험물질 제거/불티 비산방지막 설치/소화기 배치 등 화재/폭발 방지 조치	준수사항

- 이 하 여 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요약 및 대형사고 위험요인 관리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 개요

회사명	(주)에스에프에이	현장소장	김월수	
현장명	KT&G 세종 신인쇄공장 통합자동창고 신규도입	전화번호/FAX	041-539-9502	041-379-6479
현장주소	세종 전의면 양곡리 산80-1, KT&G			
공사개요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인공구조물(지상40m)			
대상공사	창고(물류창고), 공장	공사금액(원)	14,350,000,000	
착공예정일	2023-08-15	심사결과 통보일	2023-09-27	
준공예정일	2025-02-15	최초 확인예정일	2023-12-15	
산재관리번호	60981352276	개시번호	92306057877	

2. 대형사고 위험요인 관리목록

대형사고 위험요인	장소 및 작업	작업 예정시기	위험작업시 확인 중점 사항
렉 조립작업	렉 조립공사	2023-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렉 조립도와 조립기준 준수여부</li> <li>- 사용재료의 적정성 여부</li> <li>- 조립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등</li> </ul>

3. 현장 관리책임자 및 공단 전담자

현장	관리책임자	김월수	전화번호	010-6430-1061
	안전관리자	방관우	전화번호	010-2769-7016
공단	심사위원	박병규	전화번호	042-620-5620
	전담자	고운정	전화번호	042-620-5625

## [붙임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안내사항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안내 (구,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 계획서 현장의 상시적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위하여 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오니, 아래 관리번호를 통해 가입 바랍니다.
  - (주요기능) ①확인 개선결과 제출, ②대형사고 위험작업 시기 입력, ③심사 조건부 사항 등 계획서 이행여부 자료 등록, ④월별 자체점검 자료 등록

「통합지원시스템」 현장별 관리번호 : 4120230073

\* 「통합지원시스템」 접속 경로 : [kosha.or.kr/constplan](http://kosha.or.kr/constplan)

- (월별 자체점검) 계획서 현장의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매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합지원시스템」에 등록 바랍니다.
  - \* 자체점검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표」 양식을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
- (대형사고 위험작업시기) 심사 시 논의된 대형사고 위험작업시기 변경 시 해당 작업 15일 전까지 변경 일정을 「통합지원시스템」에 등록 바랍니다.
  - ※ ①매월 자체점검 결과 미등록, ②대형사고 위험작업시기 미입력 시 고용노동부 감독대상 우선 선정 예정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차등적용 및 행정조치 강화

- 사망사고 감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사고사망 특성에 따라 위험작업 시기에 맞춰 확인주기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미 이행 시 행정조치가 즉시 시행 될 수 있으니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및 안전조치」: 공단홈페이지→사업소개→건설안전→사망사고 감소 특별대책

### 3 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 변경 시 계획서 보완·변경

- 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 변경(가설구조물 변경 포함)\* 시에는 작업 시작 전까지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해당내용을 보완·변경하고 이력관리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중 주요 작성대상" 변경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가설구조물" 변경

### 4 관리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내용 인계·인수 실시

-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변경 시 계획서 인계·인수 확인서\* 작성하여 계획서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 「계획서 인계·인수 확인서」서식: 공단홈페이지→사업소개→건설안전→심사 및 확인절차





##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 전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직원 : 대전세종광역본부 건설안전부 대리 안석영  
( 전화 : 042-620-5627, 팩스 : 042-636-5508 )

업무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불편·부당한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이의제기 안내요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 ▶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지연, 설명요구 거절
- ▶ 이의제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

☞ 대전세종광역본부장 (☎ 042-620-5601) 또는  
건설안전부장 (☎ 042-620-5620, fax 042-636-5508)  
우편번호 : 34122 소재지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또는  
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부정부패 행위 신고제도 안내

## 신고대상

- 부정청탁, 금품·향응등 수수, 성희롱, 음주운전
- 예산부당사용, 부당업무지시, 기타 부정비리

## 신고방법

- On-line :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 접속→신고서 작성
- Off-line : 전화, 팩스, 우편 등

신고방법	신고센터	이용방법	이용대상
On-line (온라인)	레드취슬	공단 홈페이지 접속→부패비리익명신고하기 →신고서 작성 및 등록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아 익명성 철저히 보장 ※ 부패징후 알림, 부패행위 판단 등 부패관련 상담 가능하며,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범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외부인 내부직원
	부패알리미	공단 나누리 시스템 접속→부패알리미(신고) →신고서 작성 및 등록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아 익명성 철저히 보장	내부직원
	사이버감사실	공단 홈페이지 접속→본인인증→신고메뉴*선택→ 신고서 작성 및 등록 *부정비리·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신고	외부인 내부직원
Off-line (오프라인)	전화·팩스	전화 : 052-245-8114 팩스 : 052-246-8332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외부인 내부직원
	우편	울산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6층 감사실 ※ 신고서(관련서식 활용)에 신고내용 등을 작성하여 송부	외부인 내부직원

## 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조사(60일 이내)→조사결과통지→이의신청

##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등의 공개 금지
- (불이익조치금지) 신고한 임직원에 대해 불이익처분 금지

##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 (최고 4억8천만원+α) 또는 포상금(최고 2억원) 지급

『 건설업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이행 안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37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서 대상 현장 중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서 32명이 발생(86.5%)하였고, 공공발주현장 대비 사망 감소폭이 적어\* 하반기에도 사망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 77.8% 감소, 민간 11.1% 감소)

이에 하반기부터 고용부와 공단은 사고사망 감축을 위하여 계획서 확인 결과 불량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과태료 등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발주자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축으로 시공사의 노력과 더불어 안전보건대장과 계획서 이행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원활한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법령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자율적인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발주자 법적 조치 의무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요 및 발주자 의무

▶ **【작성대상 및 절차】**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로(산안법 제67조)로, '20.1.16.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 **【발주자 의무】**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 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고시 제8조②)

↳ **【확인 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음

□ 계획서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요청사항

계획서 관련 주요 확인사항

-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② 계획서 주요 작성내용과 실제공사의 부합 여부
- ③ 공법 및 작업방법 주요내용 변경 시 계획서에 보완 후 작업 여부 등

※ 상기 내용을 미이행 상태로 작업 시 사업장은 **직업중지, 과태료 부과** 혹은 **고용부 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법 제43조)

○ 공단에서는 착공 전 계획서 ①**심사 후 결과통지서**를 발주자에 발송(최초 1회)하고,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6개월 1회이상)하여 ②**확인결과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므로 내용을 확인 후 시공사의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한 확인 당부드립니다.